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위영상물 반포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41호) 등 19건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개요	1
1.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241호)	1
2.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244호)	3
3.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245호)	4
4.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247호)	6
5.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251호)	8
6.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14호)	9
7.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17호)	10
8.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38호)	11
9.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56호)	12
10.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95호)	14
11.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423호)	15
12.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75호)	17
13.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17호)	18
14.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546호)	19
15.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565호)	20
16.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597호)	22
17.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629호)	24
18.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651호)	25
19.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654호)	26

II. 검토의견 27

1.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 상향 27
2.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 신설 35
3. 허위영상물 등 편집등 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 삭제 41
4.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통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46
5.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명예훼손죄 등 대상 범죄 추가 48
6. 허위영상물 유통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도입 53
7.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의무 도입 60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65
9. 수사 단계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67

I. 개요

1.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24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7.

(3) 회 부 일 : 2024. 8.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을 하는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경우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을 뿐만아니라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적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2.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24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7.

(3) 회 부 일 : 2024. 8.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3.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24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7.

(3) 회 부 일 : 2024. 8.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상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제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에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입법미비 상태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반포 목적에 상관 없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

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

4.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24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27.
- (3) 회 부 일 : 2024. 8.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7월 말까지 전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천 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이 넘어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5.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25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명선의원 등 29인

(2) 제 안 일 : 2024. 8. 27.

(3) 회 부 일 : 2024. 8.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배포,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등에 대한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중·고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6.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1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배숙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28.
- (3) 회 부 일 : 2024. 8.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 등으로 인하여 겪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폐해는 실제 촬영물 등과 차이가 없음.

한편, 불법 촬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범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7.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1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권칠승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28.
- (3) 회 부 일 : 2024. 8.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허위제작물의 처벌을 규제하고 있으나, ‘유포 목적이 없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며,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영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8.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3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8. 29.
- (3) 회 부 일 : 2024. 8.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특정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겠음.

이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9.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29.
- (3) 회 부 일 : 2024. 8.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을 시작으로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내용을 “편집물등”으로 규정하고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편집물등”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편집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며, 촬영물 또는 편

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14조의3).

10.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9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29.
- (3) 회 부 일 : 2024. 8.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11.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42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특정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교사, 여군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인 중·고등 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성적 허위영상을 제작한 자만 처벌할 수 있으며, 허위영상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관련 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목적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한편, 허위영상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4조의2제1항 등).

12.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4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유정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2.
- (3) 회 부 일 : 2024. 9. 3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되어 불법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13.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51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4. 9. 2.

(3) 회 부 일 : 2024. 9.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구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 딥페이크 대상이 성인을 넘어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 노출도가 높아진 상황임. 불법 합성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에 비해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수위가 약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합성물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한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한 자를 불법 촬영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14.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54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2.
- (3) 회 부 일 : 2024. 9.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가 딥페이크’, ‘초중고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유포’, ‘군인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편집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제5항, 제14조의3, 제14조의3제1항).

15. 조은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56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4. 9. 3.
- (3) 회 부 일 : 2024.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 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실제로 작년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의자 4명 중 3명(75.8%)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기술 발달이 범죄의 저연령화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경고등이 켜지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서는 신분비공개·위장수사의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

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및 제50조제1항제1호 신설).

16.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59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청래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4. 9. 3.
- (3) 회 부 일 : 2024.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

조 제1항 제3호, 제14조의2 제4항 신설 등).

17. 전진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62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진속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4. 9. 4.
- (3) 회 부 일 : 2024. 9.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러한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18.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65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9. 4.
- (3) 회 부 일 : 2024. 9.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인원이 복수인 경우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움. 실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도 당해 법원에서 관할이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경찰이 향후 관할법원 문제를 우려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바,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관할의 기준으로 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19.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65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추미애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9. 4.
- (3) 회 부 일 : 2024. 9.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규모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은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나 신고·발견 즉시 영상물 차단·삭제 관련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을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 상향

□ 개정안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법안명	내 용
현 행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u>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배숙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u>7년</u> ----- -----. ② ----- <u>7년</u> -----. ③ ----- <u>3년 이상의 유기징역</u>-----.
이수진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u>7년</u>----- <u>7천만원</u>-----. ② -----<u>7년</u>-----<u>7천만원</u>-----. ③ -----<u>10년</u>-----.
서영교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u>6년</u>-----. ② -----<u>6년</u>-----. ③ (현행과 같음)

법안명	내 용
권칠승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u>사람의</u> ----- <u>7년</u> -----. ② <u>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1항의 영상물등에 대한 편집등을 하거나 제1항에</u> ----- <u>한 사람 또는</u> ----- <u>사람은 7년</u> -----. ③ ----- <u>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u> -----.
임미애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u>사람의</u> ----- <u>7년</u> ----- ----- <u>7천만원</u> -----. ② (현행과 같음) ③ ----- <u>10년</u> -----.
김용민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u>7년</u> ----- -----. ② ----- <u>7년</u> -----. ③ ----- <u>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u> -----.
정청래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u>7년</u> ----- <u>7천만원</u> ----- -----. ② ----- <u>반포등을 한 자 및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u> ----- <u>7년</u> ----- <u>7천만원</u> -----. ③ ----- <u>10년</u> -----.

□ 현행법에서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14조의2).

○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제14조의2)가 신설됨.

□ 개정안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정형보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상한을 높임으로써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라고 판시함.¹⁾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죄의 특성상 범죄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회복도 어려우며 그 발생 빈도수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법익침해의 정도가 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을 충족시키고 죄를 예방·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각 개정안은 제14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조배숙·권칠승·김용민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수진·정청래·임미애의원안)’,

1) 헌법재판소 2012.7.26. 2012헌바144 결정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서영교의원안)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각 개정안의 법정형 비교>

제14조의2	제1항 (편집등)	제2항 (반포등)	제3항 (영리목적 반포)
현 행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조배숙의원안 권칠승의원안 김용민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징역
이수진의원안 정청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현행과 동일 (임미애의원안)	
서영교의원안	6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과 동일

□ 형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하는바,²⁾

개정안에 대해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헌법재판소 2017.8.31. 2015헌가30 결정

- 법 제14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실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인 촬영물 또한 복제물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가상의 영상물인 허위영상물의 법정형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법정형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유사 성폭력범죄와의 법정형 비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구성요건	법정형	구성요건	법정형	구성요건	법정형
카메라 등 이용 의사에 반하여 촬영 (제1항)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등을 목적으로 영상물등을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제1항)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1항의 촬영물·복제물 반포등 또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제2항)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1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반포등 또는 편집등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제2항)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 (제3항)	3년 이상 징역
영리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3항)	3년 이상 징역	영리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3항)	7년 이하 징역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 (2항)	5년 이상 징역

○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죄 등과의 법정형과의 균형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³⁾ 제작·배포죄에 대한 징역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안에 따른 허위 영상물 죄의 법정형보다 높은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죄는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중하여 보다 무거운 처벌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고도화된 디지털 시대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경우에 실제 자신을 촬영한 영상물 유포보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더 적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사람의 신체를 실제로 촬영한 음란물과 딥페이크 음란물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⁴⁾을 일반적인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 훼손⁵⁾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⁶⁾.

□ 참고로, 해외에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불법화 및 처벌 규정 마련이 추진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연방 차원의 법안이 없고, 각 주(州)마다 주의 법적 현실, 관습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딥페이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딥페이크 범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의 미국에서는 연방의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된 여러 규제안이 통과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일례로, 2024년 7월 상원을 통과한 ‘디파이언스 법안(Defiance Act)’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고의로 무시한 경우 유포 의도를 지니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신한 사람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07조(명예훼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박소현,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2272호(국회입법조사처), p.4

- 영국은 2023년부터 ‘온라인안전법’을 시행하면서 딥페이크 포르노 공유를 불법화하였고, 2024년 4월 영국 법무부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행위도 불법적인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AI 음란물을 만든 사람에 대하여 유포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이미지가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유포자를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게 됨.
- 법원행정처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허위영상물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①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 및 법익 침해의 정도, ② 소지, 시청의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불법 영상물의 제작, 배포 등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의 유무 및 정도, ③ 형사처벌의 남용 가능성 및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2.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 신설

- 개정안은 허위영상물등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법안명	내 용
현 행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해식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까지의-----.
김한규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김남희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까지의-.
한정애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황명선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
조배숙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법안명	내 용
권칠승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연희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
서영교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6년-----. ② -----6년-----.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영상물등,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까지의-----.
임미애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
김용민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까지의-----.
한지아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
정청래 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여·소유·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현행법 제14조제4항⁷⁾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여러 형태의 디지털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20대국회 말에 신설되었음.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제14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 소지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⁸⁾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에 의해 제작된 허위 영상물 모두 원천적으로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허위영상물이 실제에 가깝게 정교해지고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피해는 실제 촬영물과 차이가 없다는 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의 경우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영상물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개정안은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7)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377회국회(임)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4.28.)

설정하거나(황명선·조배숙·권칠승·김용민의원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거나(이해식·김남희·한정애·이연희·서영교·임미애·한지아의원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고 있음(김한규·이수진의원안).

- 또한, 이해식의원안·김남희의원안·황명선의원안·이연희의원안·서영교의원안·임미애의원안·김용민의원안·한지아의원안은 허위 영상물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각 개정안의 법정형 비교>

구 분	처벌행위	법정형 (*: 기존 규정 법정형 상향 전제)	상습범
황명선의원안	소지·구입·저장·시청·판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조배숙의원안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권칠승의원안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김용민의원안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이연희의원안	소지·구입·저장·시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서영교의원안	소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임미애의원안	소지·구입·저장·시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한지아의원안	소지·구입·저장·시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정청래의원안	대여·소유·구입·저장·시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해식의원안	소지·구입·저장·시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구 분	처벌행위	법정형 (*: 기존 규정 법정형 상황 전제)	상습범
김남희의원안	소지·구입·저장·시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한정애의원안	소지·구입·저장·시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김한규의원안	소지·구입·저장·시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수진의의원안	소지·구입·저장·시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다만,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 신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대국회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대하여 심사할 당시, 불법촬영물 등을 다운로드, 소지, 구입, 시청한 행위에 대하여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불법촬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를 소지·구입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잉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⁹⁾ 등이 있었음.

- 법무부는 시청의 경우에 지나치게 처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성요건에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이해식의의원안·황명선의의원안·이연희의원안·황명선의의원안·임미애의원안·김용민의의원안·한지아의의원안은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의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9) 제377회국회(임)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0. 4. 28.) 회의록 11~12면

법 제14조에서는 불법촬영물 제작·유통의 상습범에 대하여만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형벌 체계상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중에는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 뿐만 아니라 ‘대여(정청래의원안)’와 ‘판매(황명선의원안)’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반포등’에는 ‘판매’와 ‘임대’가 포함되므로¹⁰⁾ 제14조의2제2항의 ‘반포등’에도 ‘대여’와 ‘판매’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정청래의원안은 허위영상물 등 ‘소지’가 아니라 ‘소유’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데, 현행법 제14조제4항의 ‘소지’와 ‘소유’는 그 법적 개념이 상이하고, ‘소유’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할 경우 불법 촬영물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것이므로 법체계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서영교의원안에서는 “영상물등”의 소지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상물등”은 제1항의 정의에 따라 편집하기 전의 대상물, 즉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의미하는바, 이 경우 불법적으로 편집하기 전인 일반적인 “영상물등”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한 경우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 41 -

현 행	권칠승 의원안	임미애 의원안	이연희 의원안
발할 수 있는	-----	-----	-----
형태로 편집	-----	-----	-----
· 합성 또는	-----	-----	-----
가공(이하 이	-----	-----	-----
조에서 “편집	-----	-----	-----
등”이라 한다)	-----	-----	-----
한 자는 5년	-----7년	-----7년	-----
이하의 징역	-----	-----	-----
또는 5천만원	-----	-----7천만원	-----
이하의 벌금	-----	-----	-----
에 처한다.	-----.	-----.	-----.
② 제1항에	② 반포등을	② (현행과	②·③ (현행
따른 편집물	할 목적으로	같음)	과 같음)
· 합성물·가	제1항의 영상		
공물(이하 이	물등에 대한		
항에서 “편집	편집등을 하		
물등”이라 한	거나 제1항에		
다) 또는 복제	-----		
물(복제물의	-----		
복제물을 포	-----		
함한다. 이하	-----		
이 항에서 같	-----		
다)을 반포등	-----		
을 한 자 또	---한 사람		

현 행	권칠승 의원안	임미애 의원안	이연희 의원안
는 제1항의	<u>또는</u> -----		
편집등을 할	-----		
당시에는 영	-----		
상물등의 대	-----		
상자의 의사	-----		
에 반하지 아	-----		
니한 경우에	-----		
도 사후에 그	-----		
편집물등 또	-----		
는 복제물을	-----		
영 상 물 등 의	-----		
대상자의 의	-----		
사에 반하여	-----		
반포등을 한	-----		
자는 <u>5년</u> 이	-- <u>사람은 7년</u>		
하의 징역 또	-----		
는 5천만원	-----		
이하의 벌금	-----		
에 처한다.	-----.		

- ☐ 현행법에서는 반포등을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편집물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및 이에 대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제14조의2).

○ 20대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규정을 신설할 당시에 허위영상물 제작 등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에 ‘반포 등’의 목적 요건을 규정할 지에 대하여 ① 목적 요건을 두되 아동·청소년을 소재로 한 제작 등의 행위는 목적 요건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②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성폭력처벌법에는 아동과 비아동의 구분 없이 목적 요건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었음¹¹⁾.

-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원칙적으로 ‘반포등의 목적’이 필요할 것이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경우는 목적 없더라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현행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등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불법촬영물과 달리 ‘반포등을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반포등을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영상물 편집 자체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영상물을 편집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권철승의원안은 제14조의2 제1항의 ‘반포등을 할 목적’을 삭제하면서 제2항에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1항의 영상물등에

11) 제37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2020.3.3.), 34-35쪽.

대한 편집등을 하거나' 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데,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반포등 목적 없이 편집한 경우와 반포등 목적으로 편집한 경우를 각각 다른 항에 별도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해당 요건을 추가할 경우 제1항의 영상물등 중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는 영상물등에 대한 반포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통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 개정안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통죄를 범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려는 것임.

현 행	전진숙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u>④</u> (생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 개정안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암호화된 메시지 전송 기능을 보유하는 일부 정보통신서비스를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악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딥페이크 포르노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

대학가에서 동창생의 사진을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에 악용하고 유포한 사건 등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의 범죄자들이 주로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범죄자의 신분 특징이 쉽지 않고, 범죄자가 발송한 메시지를 증거로서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사지연 및 범죄자 검거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수사지연 및 범죄자 검거 실패 등으로 피해자가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서는 ‘익명이 보장되는 통신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익명이 보장되는 통신서비스’라는 요건은 수범자 입장에서조차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명예훼손죄 등 대상 범죄 추가

- 개정안은 이 법에서 규율하는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제308조) 및 모욕(제311조)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현 행	정청래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제2조(정의) ① 이 법 에서 “성폭력범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죄를 말한다. 1. ~ 2. (생 략)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 행의 죄 중 제297 조(강간), 제297조 의2(유사강간), 제 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 00조(미수범), 제3 01조(강간등 상해 · 치상), 제301조 의2(강간등 살인	제2조(정의)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 -----	제2조(정의)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 행	정청래의원안	이수진의원안
· 치사),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 한 간음), 제303 조(업무상위력등 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 에 대한 간음, 추 행)의 죄	----- ----- -----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의 죄, 제2편 제33 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 예훼손),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및 제311조 (모욕)의 죄	3의2. 「형법」 제2 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 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 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및 제3 11조(모욕)의 죄

□ 현행법 제2조제1항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① 「형법」상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등의 반포등, 음화등의 제조등, 공연음란 ②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일부 죄 ③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개정안은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및 모욕의 죄를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로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및 모욕의 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게 될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제16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제23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 조사제(제26조), 신상정보 등록(제3장) 등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성폭력범죄 정의규정에 명예훼손죄 등 대상 범죄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범죄가 개정안과 같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되면, 수감명령의 병과 등 처벌과 절차의 특례가 적용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¹²⁾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¹³⁾
등 다수의 법률에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 9. (생략)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 21.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 ⑦ (생략)

13)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현행 법체계상 개정안의 죄는 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보호법익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를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다른 성폭력범죄와 함께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허위영상물 유통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도입

- 개정안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도입된 수사 특례를 현행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및 안 제50조)

현행	조은희의원안
<신설>	제14조의4(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현행	조은희의원안
	<u>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u> <u>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u> <u>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u> <u>3. 제14조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u> <u>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현행	조은희의원안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2. (생략) ② ~ ⑤ (생략)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로, “제25조의2”는 “제14조의4”로 본다. 제50조(벌칙) ① ----- ----- ----- -----. 1.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에 대하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에 대하여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⁴⁾).

- 21대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고 그 위장된 신분으로 거래행위 등을 하여 범죄혐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사방법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¹⁵⁾, 아동·청소년에 대한

14)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로 규정하고, 이에 한정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의결하였음.

□ 개정안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도입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를 현행법에 도입하되 청소년성보호법과 달리 수사 특례의 적용 대상인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로 규정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반포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 이외의 일반적인 경우에 대하여도 수사 특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은 대부분 폐쇄적인 사이트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은밀하게 반포등이 되며 범죄자들끼리 전혀 접촉하지 않고도 그 위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될 위험성이 낮은바¹⁶⁾ 이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는 전형적인 형사사법절차의 특례에 해당하고 이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일반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6) 신상현, “새로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2호(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114면

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제25조의7) 및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제65조)을 두고 있는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7을 준용하는 개정안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청소년성보호법에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① 특히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일부 범죄에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②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에만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이는바, 이러한 도입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나아가 성폭력처벌법에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수용하여 수사 특례의 범위를 넓힐 경우 이러한 특례가 향후 다른 범죄의 수사에까지도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같이 청소년정보보호법의 규정을 그대로 도입하면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예방하기 위한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의 효율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하다고 보임.

- 청소년정보보호법 제25조의2에서는 신분위장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을 판매 또는 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불법촬영물의 피해자에게 판매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등의 과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7.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의무 도입

-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피해 영상물 및 게시판의 삭제·차단요청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강유정의원안	추미애의원안
<신 설>	<u>제14조의4(응급조치)</u> <u>제14조 및 제14조의2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u> <u>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u>	<u>제14조의4(응급조치)</u> <u>제13조, 제14조의3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제14조의2의 영상물등,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채증 및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의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u>

현행	강유정의원안	추미애의원안
	<u>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u> <u>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u>	<u>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u> <u>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u> <u>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u> <u>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단,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u>

□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영상물 또는 게시판의 삭제·차단요청 등

응급조치를 즉시 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영상물등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현행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불법정보 심의 및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제한 등 제재조치 처분의 명령 요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에 대하여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의무적 대응을 통해 영상물 등의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참고로, 응급조치와 관련된 입법례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

17)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18)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 등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응급조치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험의 급박성 및 가해자의 특정성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비대면으로 범죄가 발생하여 가해자 특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범죄행위의 제지와 관련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²¹⁾하고 있는바,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사법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19) 제36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톱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톱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톱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후 해당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차단되기까지의 시간적 소요가 크지 않을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문제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삭제·차단 요청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수사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등의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1) 2019년 11월 12일 상시적 협업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음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 개정안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허위영상물 반포등 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정청래의원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u>반포등을 한 자 또는</u>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생 략) ② ----- ----- ----- -----반포등 을 한 자 및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 -----7년----- ---7천만원----- -----.

□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허위영상물등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삭제 및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²²⁾에 따라 조치의무를 위반한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적허위영상물’ 제작·유포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아니하였거나 방치한 일종의 방조범이라 볼 수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성적허위영상물’ 제작·반포등을 한 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 체계의 균형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수사 단계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수사단계에서 수사관할과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 3 신설).

현 행	김용민의원안
<신 설>	<u>제41조의2(관할의 특례) ① 제14조 내지 제14조의2의 각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본다.</u>

- 현행 「형사소송법」 제256조²³⁾에 따르면 타관송치시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 등과 다른 피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23)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고소 등이 있는 경우 증거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법원도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고 있음.

○ 토지관할은 동등법원 상호간에 사건의 지역적 관계에 의한 관할의 배분으로 동등법원간에 있어서 사건의 토지관계에 의한 관할의 분배를 말하고, 사건의 능률적 처리와 피고인의 출석·방어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임.

○ 검찰의 관할구역은 법원의 관할에 따르고(「검찰청법」 제3조), 검사는 사건이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함(「형사소송법」 제256조). 경찰의 경우 법률이 아닌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서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디지털성범죄의 수사관할과 피의자 구속 및 증거물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가 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관할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송치에 따른 수사 지연 등을 방지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일부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할 위반을 사유로 수사기관간 사건 송치가 이루어지거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도 검찰이나 법원이 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일부 있었던바, 그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왔음.

□ 다만, 수사 단계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출석·방어의 편의를 기준으로 법원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주소지 등도 토지관할의 기준지로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출석 편의 및 방어권 보장을 제한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단계 토지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시 디지털성범죄 수사 지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측면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출석 편의 및 방어권 보장 제한 가능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관할은 형사사법권 행사의 기준이 되므로 관할에 관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균형 측면에서 적절하지는 않은지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073